

정보공개규정

12차/개정 2022-06-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6.07.>
 <조 개정 2011.12.26.>

제2조(적용범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본사, 시화사업본부·유역본부·지사·단 등(이하 "지사"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4.06 ,개정 2018.04.27, 2020.10.30., 2022.06.07>
 <조 개정 2011.12.2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6., 2022.06.07>
 2. “공개”란 공사가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개정 2011.12.26. >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 개정 2011.12.26. >
 4. “관리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개정 2011.12.26. >
- <조 개정 2010.03.12.>

제2장 정보공개 관련 의무 [<본장 개정 2014.08.01>, 제목개정 2022.06.07.]

제4조(정보공개 관련 의무)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정보공개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 결과를 내부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07.]

제4조의2(부당한 처리에 대한 조치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업무 처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의 의사결정자에 대한 징계 관련 감사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거짓정보를 고의로 공개하는 경우
- 2.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숨기는 경우
-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결과에 따라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고의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06.07.]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4.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신설 2011.12.26, 개정 2022.06.07.>
 - 5. <삭제 2014.08.01> <신설 2011.12.26. >
 -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신설 2011.12.26.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신설 2011.12.26, 개정 2022.06.07.>
 - 나.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신설 2011.12.26. >
 - 7.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신설 2011.12.26 ,개정 2014.08.01.>
 - 8. 사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신설 2011.12.26. >
 - 9.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신설 2011.12.26, 개정 2020.10.30.>
 - 10.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신설 2020.10.30.>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12.26 ,개정 2014.08.01.>
- ③ 총괄부서 및 지사 등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안내와 상담편의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6 ,개정 2014.08.01.,개정 2018.04.27>

④ 제1항제9호에서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하는 정보의 목록은 과거의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고려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0.3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06.07.]

제5조의2(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의 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전공개 대상 정보를 성실하게 공표하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7.>
[본조신설 2020.10.3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06.07.]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원문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포함)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 중 원문 공개 대상(사장 및 임원급 결재문서)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포함)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 정보 중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6.07.>
[본조신설 2014.08.01,전부개정 2016.03.0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06.07.]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7조(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08.01, 개정 2022.06.07.>
②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총괄부서(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접수된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인 경우에 한함) 또는 관리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총괄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분류하되,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부서를 지정한다. < 개정 2011.12.26 ,개정 2014.08.0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6.07.]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고객관리시스템(K-CRM)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06.07.>
⑤ 관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6.07.>

⑥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고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설 2022.06.07.>

[본조신설 2014.08.0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06.07.]

제9조(정보공개 처리 예외사항) 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이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6.07.>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개정 2022.06.07.>

2.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06.0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신설 2022.06.07.>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신설 2022.06.07.>

[본조신설 2014.08.0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6.07.]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개정 2011.12.26. >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개정 2011.12.26. >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6.07.]

제11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사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나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1., 2022.06.07>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 중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정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개정 2011.12.26 ,개정 2014.08.01.>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07.>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06.07.]

제12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06.07.>

[<조 개정 2010.03.12,개정 2014.08.0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06.07.]

제13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7.>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개정 2014.08.01. >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개정 2014.08.01. >
4.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 개정 2014.08.01. >

[<조 개정 2010.03.12,개정 2014.08.0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06.07.]

제14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8.01., 2022.06.07>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7.>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06.07.]

제15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26., 2014.08.01>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현금과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삭제 <2008.8.14.>

4. <삭제 2011.12.26.>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신설 2011.12.26. >

⑤ 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11.12.26. >

1.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 50퍼센트 < 개정 2011.12.26. >

2. 삭제 <2008.8.14.>

3. <삭제 2011.12.26.>

4. 제4항제5호에 해당할 경우 : 100퍼센트 < 신설 2011.12.26. >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06.07.]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본장 개정 2014.08.01>, 제목개정 2022.06.07.]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6., 2022.06.0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2급(을) 이상 직원 중에서 1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된다. < 개정 2011.12.26. >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업무처리규정」 [별표1]에 따른 자문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0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06.07.]

제17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개정 2011.12.26. >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신설 2011.12.26. >

2.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가. 공사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신설 2011.12.26. >

- 나. 청구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 다. 제3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신설 2011.12.26. >
 - 마.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신설 2022.06.07.>
 - 바.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신설 2022.06.07.>
3. <삭제 2014.08.01> < 신설 2011.12.26. >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6.07.>
-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2.26. >
-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06.07.]

제18조(지사·단 등의 심의회 설치·운영) ① 지사 등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개정 2018.04.27.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그 밖에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개정 2014.08.01., 2022.06.0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06.07.]

제5장 이의신청 [제목개정 2022.06.07.]

제19조(이의신청)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공사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11.12.26.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 개최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포함)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2.06.07>

③ 관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2.06.07>

[본조 신설 2008.08.1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06.07.]

부칙 (2005.01.01.)

정보공개규정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1.18.)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3.)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3.)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2.)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제4항과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8.0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09.)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6.)

이 규정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7.)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30.)

이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6.07.)

이 규정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